

	강의전담교원 규정		문서번호	MSU-
			제정일자	2013. 7. 1
			최종개정일자	2018. 11. 15.
	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강의전담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강의전담교원이라 함은 학생의 교육 및 지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임용방법) ① 강의전담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,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8.11.15>

② 강의전담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임용으로 한다.

③ 공개임용이라 함은 공개임용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교원으로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임용함을 말한다.

제4조(자격기준) 강의전담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, 담당할 과목과 학위 전공분야의 전공일치성 또는 경력(교육 및 산업체)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전공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관련학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<개정 2014.7.2>

제5조(보수 및 강의시간) 강의전담교원의 보수 및 강의시간은 계약으로 정한다.

제6조(교원의 소속) 강의전담교원의 소속은 학과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업적평가 및 강의평가) 강의전담교원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원업적평가 및 강의평가를 받는다.

제8조(임용기간 및 재임용) ① 강의전담교원은 1년 계약직 연봉제로 임용되며, 재임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1년씩 재계약 될 수 있다. 다만,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료일에 당연 퇴직된다.

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강의전담교원은 소속학과 전체교수의 적격 심의를 거친 후,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평가,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계약 한다.

③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인 2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며, 재계약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임용계약) 임용계약은 해당 교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임용한다.

① 임용기간에 관한 사항

②급여에 관한 사항

③직무내용 및 책임강의 시간

④그 밖에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복무 및 처우) ①강의전담교원은 임용기간 중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며, 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대학의 제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.

③강의전담교원은 형의선고, 징계처분 또는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,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

강의전담교원 재임용 평가표

[illegible]